|  |  |  |
| --- | --- | --- |
| **외국인투자 인터넷, 자판기 방식 판매프로젝트 심사비준 관리문제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商資字 [2010] 27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하얼빈, 장춘, 심양, 제남, 남경, 항주, 광주, 무한, 성도, 서안 상무주무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위원회:  기업의 원가를 절감하고 상품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면에서 인터넷판매, 자판기판매 등 방식의 적극적인 작용을 한층 더 발휘시키기 위하여, 《외자유치 업무를 강화할 것과 관련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發 [2010] 9호) 중 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줄일 데 대한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터넷판매와 자판기판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과 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판매 관련  (1) 인터넷판매는 기업의 판매행위가 인터넷에서의 외연이다. 따라서 법적 비준을 받고 등록 등기한 외국인투자 생산성기업, 상업기업은 직접 인터넷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인터넷판매에 전문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심사 비준한다. 상무기구가 아직 병합되지 아니한 성은 그 성급 외자주무부서가 동급 국내무역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의 네트워킹플랫폼을 이용하여 기타 거래측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업정보화부에 전신 증식업무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자체의 네트워킹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신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와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웹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영업허가증을 공개해야 하며, 기업이 정제유, 원유, 도서와 신문간행물, 약품 등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 비준증서 정보와 분별이 가능한 사진이나 링크 표지도 공개해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반품, 교체 제도를 구축하고 판매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개인프라이버시와 상업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인터넷 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7)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기 전에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아울러 공상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2. 자판기판매 관련  (1) 자판기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 설립기업이 자판기판매 방식의 판매 업무를 증가 시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외자주무부서는 동급 국내무역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과 위생, 식품약품 감독관리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심사 비준해야 한다.  (2)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자판기의 뚜렷한 위치에 경영자의 명칭, 주소, 전화, 소비자신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3)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사업모델이 명확한 자판기 운영, 상품의 품질관리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4) 자판기 운영기업은 판매제품의 데이터 보관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판기에 그 전의 판매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5)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및 관련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0년 8월 19일 |  | **商务部办公厅关于外商投资企业互联网、自动售货机方式销售**  **项目审批管理有关问题的通知**  商资字[2010]272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哈尔滨、长春、沈阳、济南、南京、杭州、广州、武汉、成都、西安商务主管部门，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  为了进一步发挥互联网销售、自动售货机销售等方式在降低企业成本，促进商品流通，拉动消费等方面的积极作用，根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若干意见》（国发[2010]9号）中关于简化和减少审批的要球，现就外商投资网络销售和自动售货机销售项目的审批和管理问题通知如下：  一、关于互联网销售  （一）互联网销售是企业销售行为在互联网上的延伸，经依法批准、注册登记的外商投资生产型企业、商业企业可以直接从事网上销售业务；  （二）申请设立专门从事网上销售的外商投资企业报省级商务主管部门批准，由省级商务主管部门根据《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及其它相关的法律法规进行严格审批。商务机构尚未合并的省，省级外资主管部门应征求同级内贸管理部门的意见；  （三）外商投资企业利用企业自身网络平台为其他交易方提供网络服务的，应向工业和信息化部申请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企业利用自身网络平台直接从事商品销售的，应向电线管理部门备案；  （四）外商投资企业从事网络销售及其有关服务行为时，应当在其网站主页面或从事经营活动的网页醒目位置公开营业执照，如企业经营成品油、原油、图书报刊、药品等商品，还需公开经营批准证书的信息以及清晰可辨的照片或其电子链接标识；  （五）外商投资企业从事网络销售应建立合理的退换货制度，保存销售记录，严格保护消费者个人隐私和商业秘密；  （六）外商投资企业从事网络销售应当遵守《消费者权益保护法》和《产品质量法》等法律、法规、规章的规定，法律法规禁止交易的商品和服务，不得在网上进行交易；  （七）依照相关法律规定，如外商投资企业通过网络销售的产品或提供的服务在登记前须经批准的，应当在申请登记前报经国家有关部门批准，并办理工商登记注册。  二、关于自动售货机销售  （一）申请设立以自动售货机销售方式销售商品的外商投资企业，或已设立企业增加自动售货机销售方式销售业务的，报省级商务主管部门审批。省级外资主管部门应征求同级内贸管理部门意见，根据《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及卫生、食品药品监督管理等相关法律法规严格审批；  （二）自动售货机方式销售企业应在自动售货机醒目位置上明示经营者名称、地址、电话、投诉方法；  （三）自动售货机方式销售企业应建立模式清晰的自动售货机运营、商品质量管理和纠纷解决机制；  （四）自动售货机运营企业需要建立销售产品数据保存机制，自动售货机自动保存前售货记录；  （五）自动售货机方式销售企业应当遵守《消费者权益保护法》和《产品质量法》等法律及相关法规规章的规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O一O年八月十九日 |